

<b>의안 번호</b>	<b>2177</b>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(목)
- 제출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1. 9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2. 4.(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 및 회계관직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- 관련법 개정 및 회계관직 명칭 등 변경(안 제1조 ~ 제5조)
-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
-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와 관련법 개정 및 회계관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이용) 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이하 “기금계정”이라 한다)을 설정·운영하여야 한다.